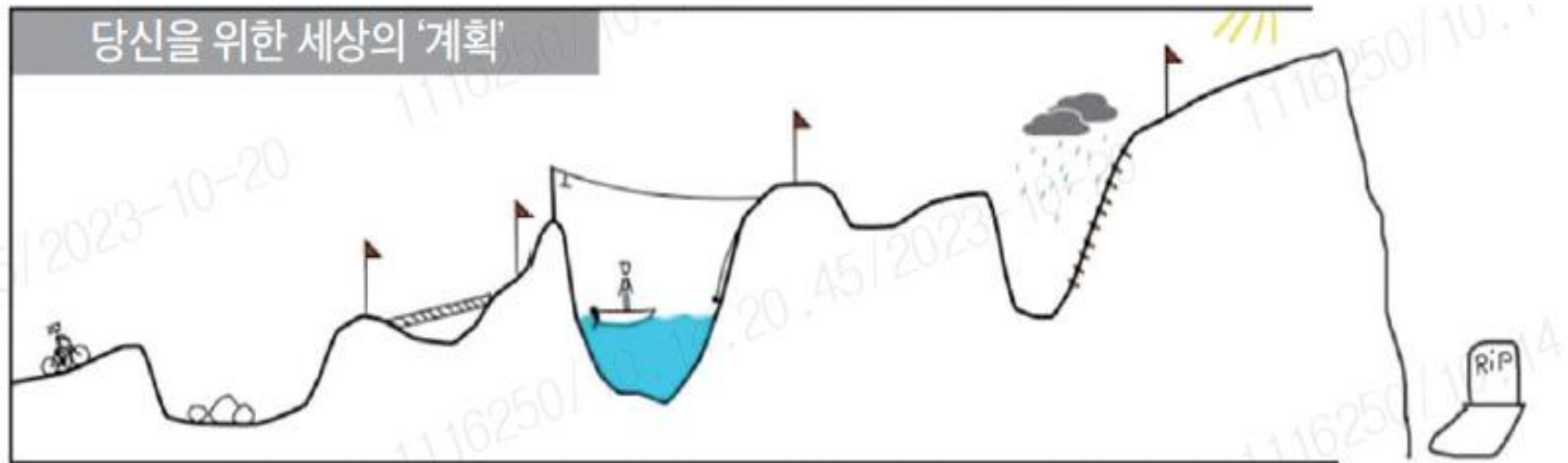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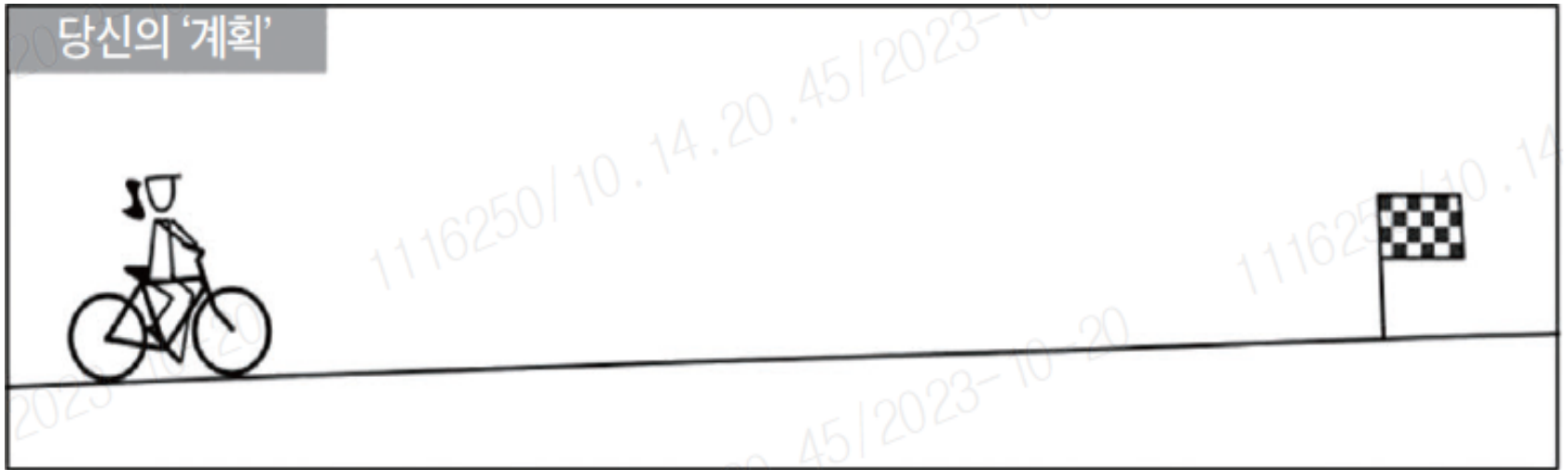


**연금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센터 김동엽

당신의 계획, 당신을 위한 세상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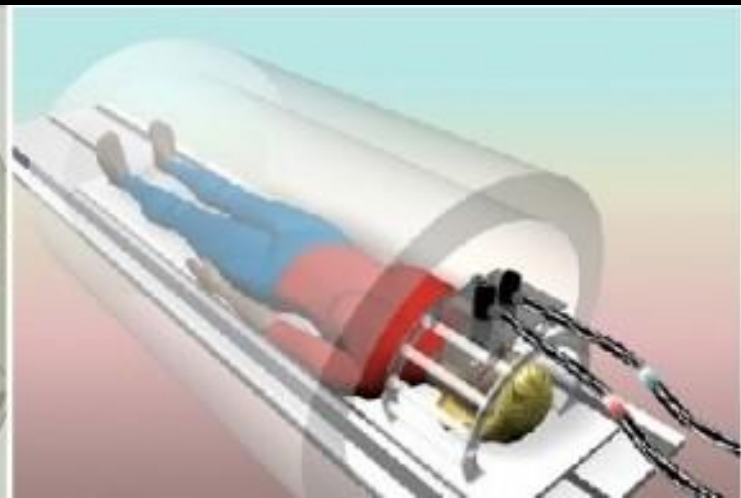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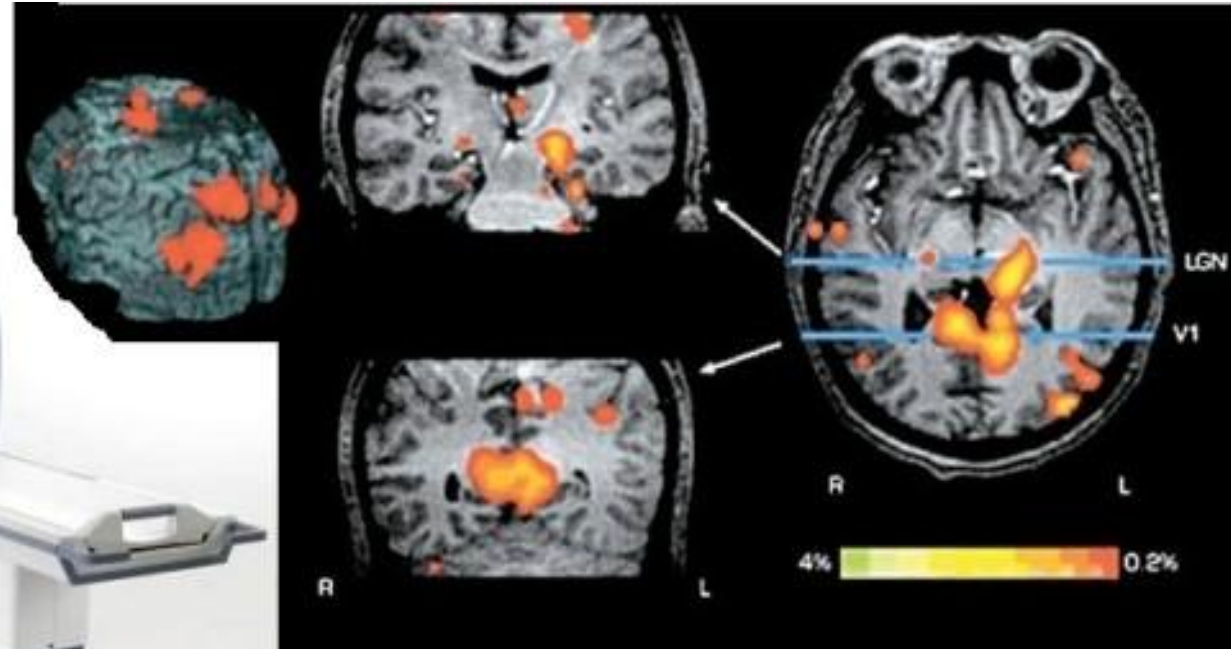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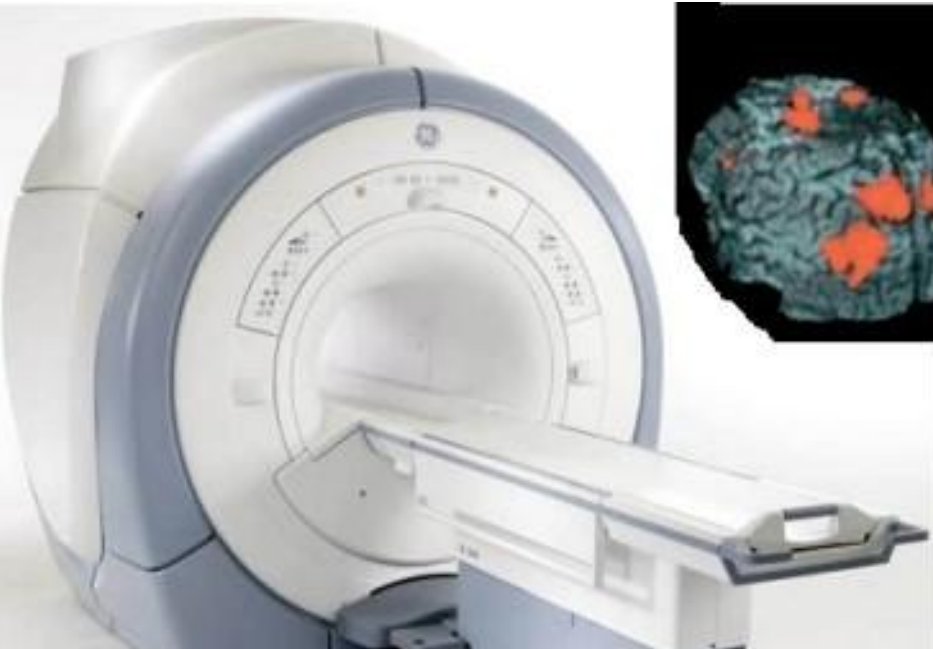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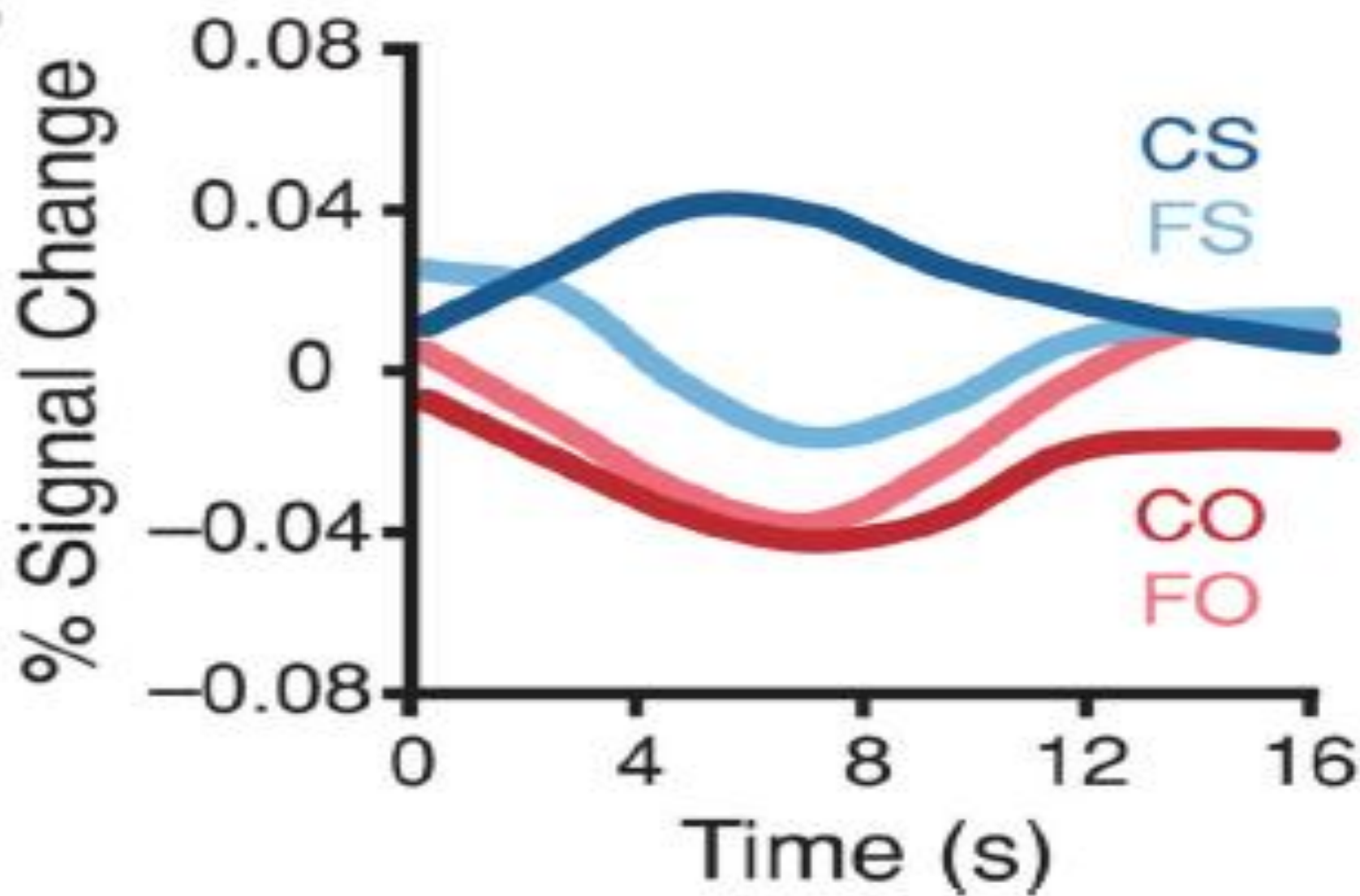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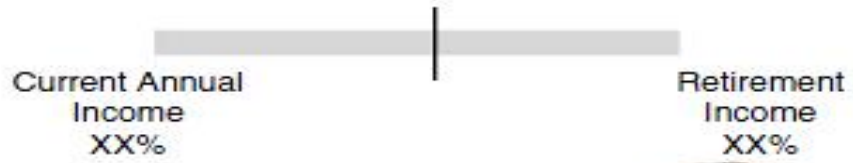
**노후대비 안 하는 것은
내 탓일까, 뇌 탓일까?**

할 허쉬필드 fMRI 촬영

- 1) '현재의 나' 를 생각하세요
- 2) '다른 사람' 을 생각하세요
- 3) '10년 후 나' 를 생각하세요







Next



Next



Next

給料

2017年 11月分

殿

給料

2017年 12月分

給料

2017年 1月分

殿

給料

2017年 2月分

殿

給料

2017年 3月分

殿

평생 월급 만들기

곳간과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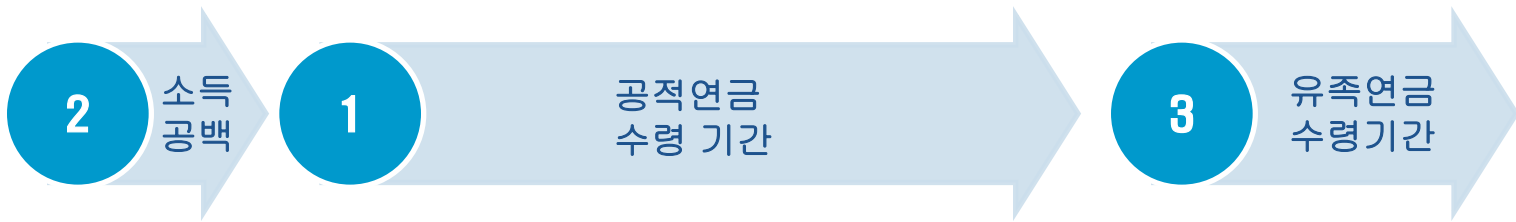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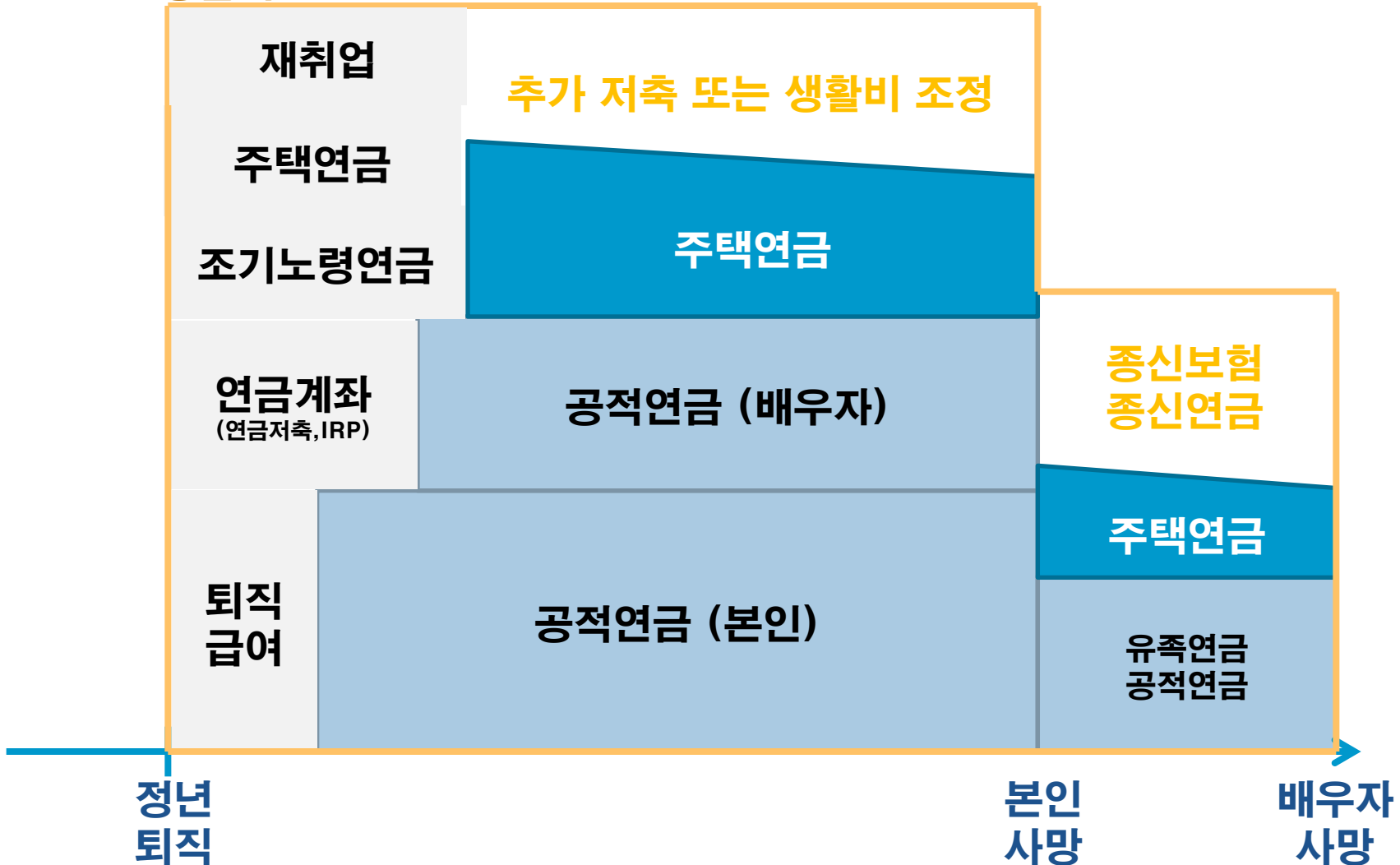
(단위:만원/월)

구분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부	개인	부부	개인
전체	217.1	136.1	296.9	192.1
서울	248.2	156.8	337.1	219.8
광역시	215.3	130.7	298.7	186.0
도	208.3	132.1	283.6	186.3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23년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생활비





연금 더 받고 세금 덜 내는 법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DB가 유리할까, DC가 유리할까?

임금상승률



DC 운용수익률

DB 유리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



임금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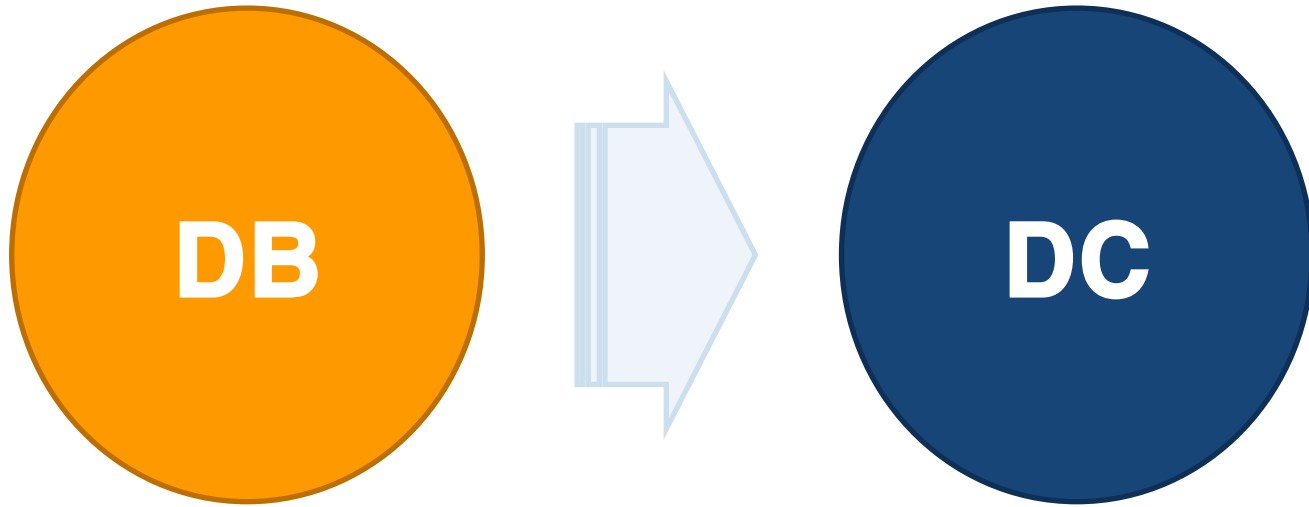
DC 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이
낮은 경우

DC 유리



이럴 때 DC형 퇴직연금이 필요하다.



- 연공서열 호봉제 임금체계
- 높은 임금 상승률

- 임금상승률 둔화
- 임금피크제
- 연봉제
- 경영성과급 절세

DC형 퇴직연금 가입시 체크 리스트 10

1. DC형 퇴직연금 시행일은 언제인가?
2. 이전 퇴직급여(퇴직금, DB형)은 유지되나, 폐지되나?
3. 과거 제도가 유지되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는가?
4. 퇴직연금사업자는 단수인가, 복수인가?
5.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포함되나?
6. 미래 부담금은 언제 얼마나 납입해 주는가?
7. 퇴직연금 가입 대상은? (1년 미만자, 임원 포함 여부)
8. (복수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변경 시기는?
9. 디폴트옵션상품은 선택했는가?
10. 투자상품을 선택했는가?

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구분	증권	은행	보험
원리금 보장	예금	O	O	X
	이율보증보험(GIC)	O	O	O
	원리금보장ELB	O	O	X
	국채	O	X	X
원금보장	원금보장ELB	O	X	X
실적배당	펀드(TDF)	O	O	△ (일부)
	ETF	O	△ (실시간 불가능)	△ (실시간 불가능)

*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퇴직연금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퇴직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배수(12배)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환산배수(12배)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현행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환산급여공제

소득금액	공제율
800만원 이하	100%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퇴직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구분		근속년수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퇴직급여	5천만원	236만원	75만원	33만원	-	-	-	-
	1억원	1,036만원	426만원	239만원	123만원	75만원	26만원	-
	2억원	3,571만원	1,966만원	1,162만원	773만원	558만원	380만원	242만원
	3억원	6,392만원	4,289만원	2,844만원	1,984만원	1,361만원	1,085만원	870만원
	4억원	9,316만원	7,006만원	4,961만원	3,721만원	2,771만원	2,105만원	1,651만원
	5억원	12,319만원	9,781만원	7,656만원	5,838만원	4,545만원	3,557만원	2,892만원
	10억	28,029만원	24,487만원	21,678만원	19,276만원	17,039만원	14,904만원	12,770만원

중간정산하면 퇴직금 더 내야 하나요?

- **금번 퇴직금 관련 자료 (DB형 퇴직연금 가입)**

- **입사한 날: 1991년 1월 1일,**
- **퇴직한 날: 2023년 12월 31일**
- **법정퇴직금: 4,000만원**
- **명예퇴직금: 3억원**

- **과거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 관련 자료**

- **중간정산일: 2013년 12월 31일**
- **중간정산 퇴직급여: 1억 6,000만원**
- **납부한 퇴직소득세: 492만원(지방소득세 49만원)**

중간정산하면 세금 더 내야 하나요?

구분	퇴직소득 정산 특례 미적용
퇴직급여	34,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32,500만원
× 환산배수	12배
÷ 근속연수	10년
= 환산급여	39,000만원
- 환산급여공제	18,320만원
= 과세표준	20,680만원
× 소득세율	(6~45%)
= 환산산출세액	5,864만원
× 근속연수	10년
÷ 환산배수	12배
= 산출세액	4,887만원
- 기납부세액	-
= 퇴직소득세	4,887만원
+ 지방소득세	489만원
= 총납부세액	5,376만원

퇴직소득 세액정산

개념

- 중간정산, 중도인출, 임원 승진 등 과거에 퇴직금을 수령했던 경우, 과거 중간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
- 주로 중간정산 등 이력이 있는 사람이 퇴직하며 목돈의 위로금·명퇴금 등을 받는 경우에 세금 절약 효과가 크게 있음

세액정산 가능 중간지급 사유

- ①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 직원으로 재직 중 중간정산 또는 DC 중도인출 한 경우
- ②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 ③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으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 ④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 ⑤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⑥ 비정규직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정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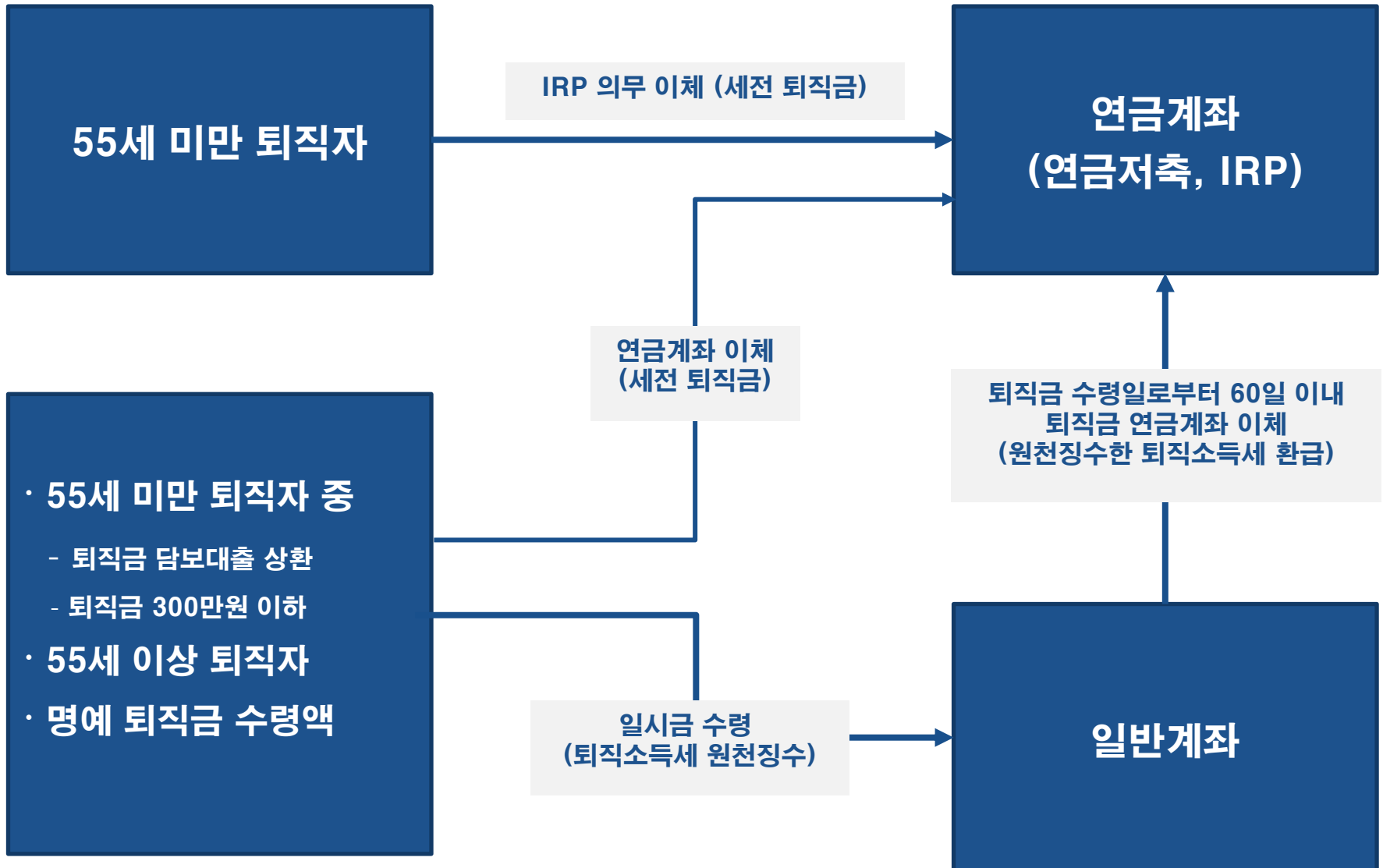
- ① [퇴직급여] 중간지급 퇴직금 + 최종 퇴직시 퇴직금
- ② [근속기간] 중간지급 시 근속기간 + 중간지급 이후 근속기간
- ③ [세금] 상기 ① ② 를 이용해 계산한 퇴직소득세 - 중간지급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간지급 이후 기간만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비교하여
유리한 것 선택!

퇴직소득 세액정산

구분	퇴직소득 정산 특례 미적용	퇴직소득 정산 특례 적용
퇴직급여	34,000만원	50,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7,900만원
=	32,500만원	42,100만원
× 환산배수	12배	12배
÷ 근속연수	10년	33년
= 환산급여	39,000만원	15,309만원
- 환산급여공제	18,320만원	8,559만원
= 과세표준	20,680만원	6,750만원
× 소득세율	(6~45%)	(6~45%)
= 환산산출세액	5,864만원	1,044만원
× 근속연수	10년	33년
÷ 환산배수	12배	12배
= 산출세액	4,887만원	2,871만원
- 기납부세액	-	492만원
= 퇴직소득세	4,887만원	2,379만원
+ 지방소득세	489만원	238만원
= 총납부세액	5,376만원	2,617만원
정산특례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		2,759만원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혜택은?

① 퇴직소득세 30~50% 경감

- 만 55세 이후부터 퇴직연금 수령 가능
-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부터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 과세

②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저율 과세

- 퇴직수당을 전부 인출한 다음에 운용수익을 인출
-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이면 낮은 세율(3.3~5.5%) 분리과세
 - ▶ 55~69세 - 5.5%, 70~79세 - 4.4%, 80세 이상 -3.3%

③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

-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퇴직연금 수령할 때 세금은?

<사례>

홍길동씨가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4억 원을 새로 만든 IRP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려 한다. (퇴직소득세 : 4,000만원)

<매년 4000만원씩 연금 수령>

	1년차	2년차	3년차	...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
연금	4000	4000	4000	...	4000	4000	4000	4000	4000	...
세금	280	280	280	...	280	280	280	220	220	...

연금재원 = 퇴직급여

퇴직소득세율 = 4000만원/4억원 = 10%

연금소득세율 = 퇴직소득세율 × 70% = 7%

연금재원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율

- 55~69세 : 5.5%
- 60~79세 : 4.4%
- 80세이상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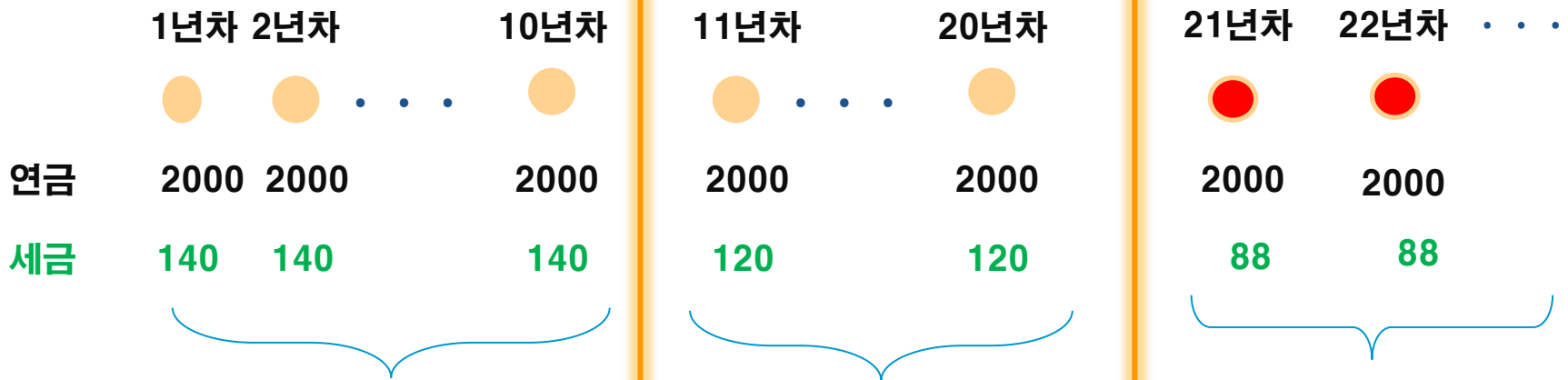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시
⇒ 종합과세 or 16.5% 단일세율 과세

퇴직연금 수령할 때 세금은?

<사례>

홍길동씨가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4억 원을 새로 만든 IRP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려 한다. (퇴직소득세 : 4,000만원)

<매년 2000 만원씩 연금 수령>



연금재원 = 퇴직급여

퇴직소득세율 = 4000만원/4억원 = 10%

연금소득세율 = 퇴직소득세율 × 70% = 7%

연금재원 = 퇴직급여

퇴직소득세율 = 4000만원/4억원 = 10%

연금소득세율 = 퇴직소득세율 × 60% = 6%

연금재원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율

- 55~69세 : 5.5%
- 60~79세 : 4.4%
- 80세이상 : 3.3%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시
⇒ 종합과세 or 16.5% 단일세율 과세

퇴직연금 수령할 때 세금은?

연금재원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	<p>◆ 연금소득세율 (연금실제수령연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년차 : 퇴직소득세율의 70% 11~20년차 : 퇴직소득세율의 60% 21년차 이후 : 퇴직소득세율의 50% <p>◆ 전액 분리과세</p>	퇴직소득세율의 100%										
세액공제 받은 저축 금액 운용수익	<p>◆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수령 나이</th> <th>종신연금 외</th> <th>종신연금</th> </tr> </thead> <tbody> <tr> <td>55~69세</td> <td>5.5%</td> <td rowspan="3">3.3%</td> </tr> <tr> <td>70~79세</td> <td>4.4%</td> </tr> <tr> <td>80세 이상</td> <td>3.3%</td> </tr> </tbody> </table> <p>◆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16.5%의 단일세율 선택 가능 	수령 나이	종신연금 외	종신연금	55~69세	5.5%	3.3%	70~79세	4.4%	80세 이상	3.3%	16.5% (기타소득세)
수령 나이	종신연금 외	종신연금										
55~69세	5.5%	3.3%										
70~79세	4.4%											
80세 이상	3.3%											

연금계좌

- ◆ 연간 납입 한도 : 1,800만원
- ◆ 연간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 (연금저축만 가입시 60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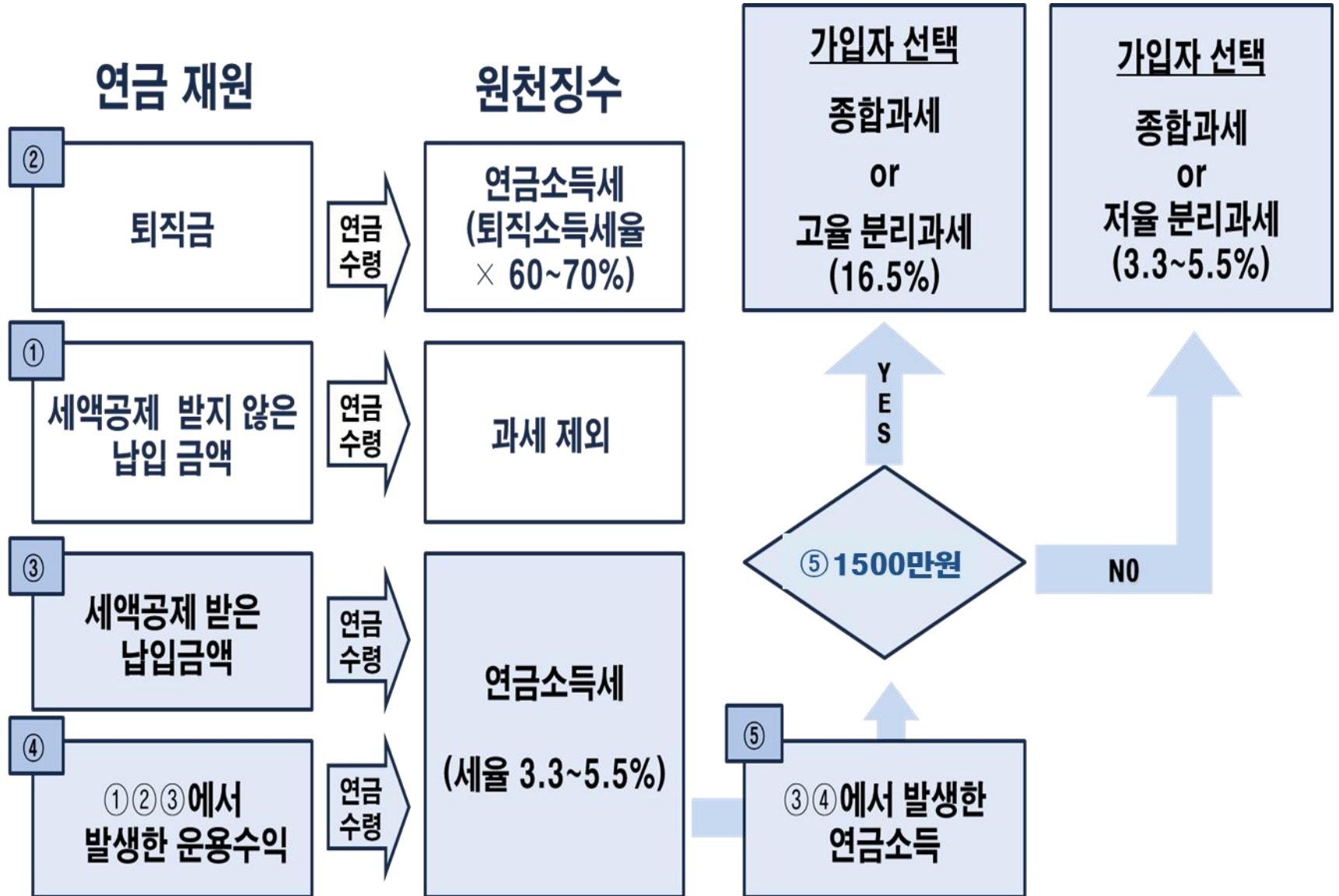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	세액 공제율	최대 환급세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148만 5천원 (99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79만 2천원)

연금계좌 과세프로세스

- 연간 저축한도 : 1800만원 + ISA 만기자금 +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1억원)
- 연간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 + ISA 만기자금의 10%(300만원 한도)
- 운용수익 과세 이연 : 이자·배당 소득세(15.4%) → 연금소득세(3.3~5.5%)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자유롭게 인출 가능

<p>① 에서 얻은 운용수익</p>	<p>②에서 얻은 운용수익</p>
<p>①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p>	<p>②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납입금액-세액공제금액)</p>

연금계좌 과세프로세스



연간 연금수령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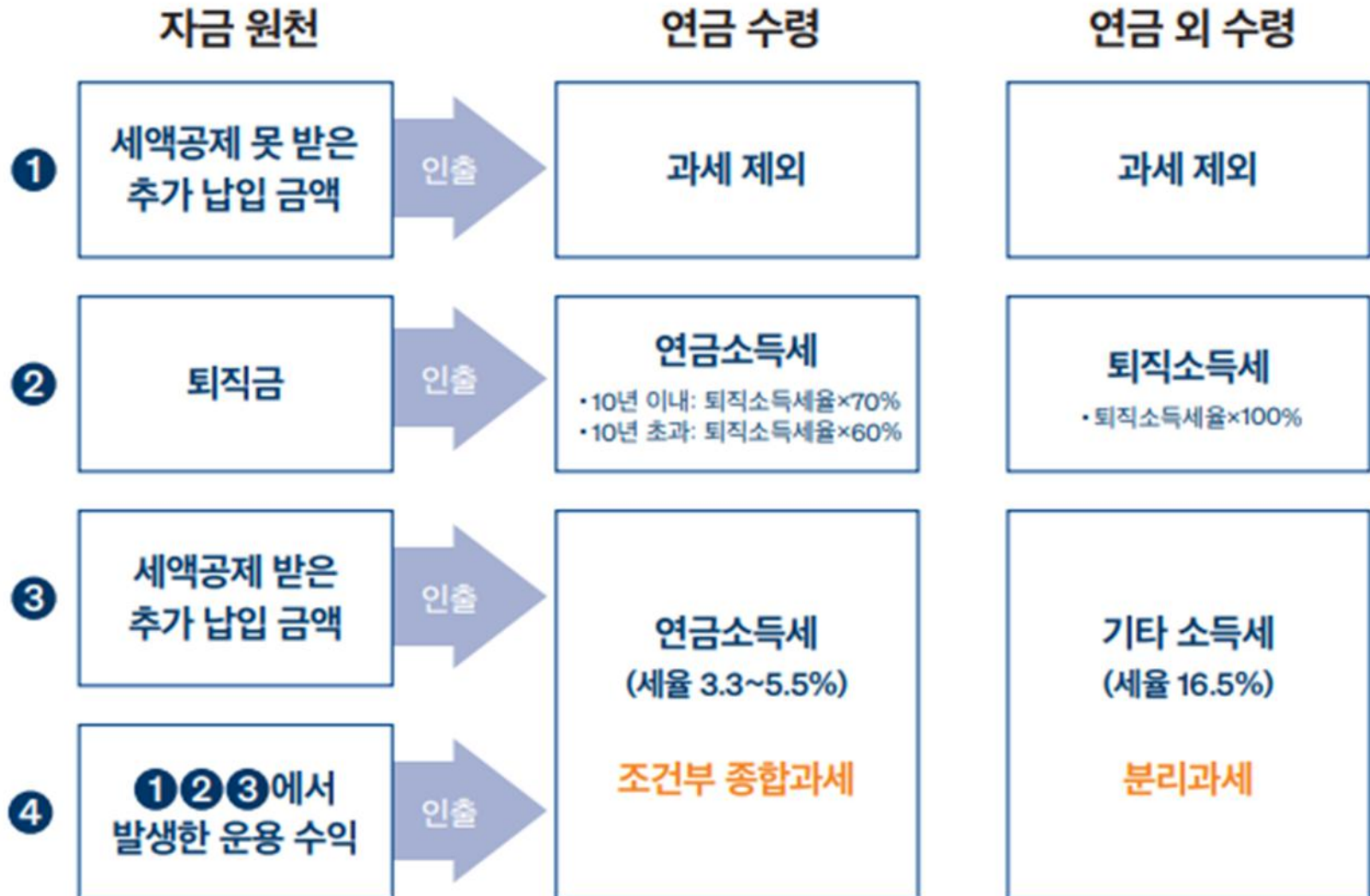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 - 연금소득, 한도초과금액 - 연금 외 수령

- 최초 연금 수령 가능한 해를 1년 차로 하며,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연차는 경과
-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 갱신
- 11년 차부터 한도 없이 연금소득 처리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단, **2013.3.1**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또는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DB포함)에서 새로 개설한 IRP로 전액 이체된 경우에는 수령 연차를 **6**에서 시작

연금 수령과 연금외 수령



연금계좌를 이용해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	세액 공제율	최대 환급세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148만 5천원 (99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79만 2천원)

ISA

구분	ISA 주요 내용
가입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1인 1계좌)<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한도 이월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투자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상장 주식, 펀드(국내 상장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ELS 등), 예적금
의무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내 상품간 손익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금액 분리과세(9.9%)
만기자금 연금계좌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체 금액 중 10% 세액공제 (300만원 한도)

ISA 활용해 연금자산 키우기

- ① ISA 가입
- ② 3년 후 만기 자금 60일 내에 연금저축계좌 납입/ ISA 재가입
- ③ 3년마다 ②번 반복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납입	900만원	9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
ISA 가입

↑
ISA 만기 납입
ISA 재가입

↑
ISA 만기 납입
ISA 재가입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퇴직 후 3년간 이전 직장
에서 납부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
료가 부과된다.

채취업한 자나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대당 보험료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 점수 X 부과 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정률제)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소득월액 최저 보험료(1만 9,780원)

•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 연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재산(점수)

• 60등급

1등급: 22점

~

60등급: 2,341점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재산

소득 종류		부과 여부	적용 비율
사업소득		○	100%
기타소득		○	100%
이자/배당 소득		○ 연간 1,000만원 초과	100%
근로소득		○	50%
연금 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50%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	×	-

재산 종류	적용 비율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전월세	{보증금+(월세의 40배)}의 30%

예상 건강보험료 (2026년)

▣ 소득 보험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6,353만원
보험료율	-	7.19%	7.19%	7.19%	7.19%	7.19%	7.19%	7.19%
소득보험료	19,780	71,900	143,800	215,700	359,500	719,000	2,157,000	4,504,170
장기요양보험료	2,590	9,440	18,890	28,340	47,240	94,480	283,440	591,860
예상지역건보료	22,370	81,340	162,690	244,040	406,740	813,480	2,440,440	5,096,030

▣ 재산 보험료

재산세 과표	2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78억원
재산 점수	439	757	1001	1191	1341	1571	1991	2271
점수당 보험료	211.5	211.5	211.5	211.5	211.5	211.5	211.5	211.5
재산보험료	92,840	160,100	211,710	251,890	283,620	332,260	421,090	480,310
장기요양보험료	12,190	21,030	27,810	33,090	37,260	43,660	55,330	63,110
예상지역보험료	105,030	181,130	239,520	284,980	320,880	375,920	476,420	543,420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득

-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 연간 2,000만원 이하
 -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
 -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인 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인 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임의계속가입

◆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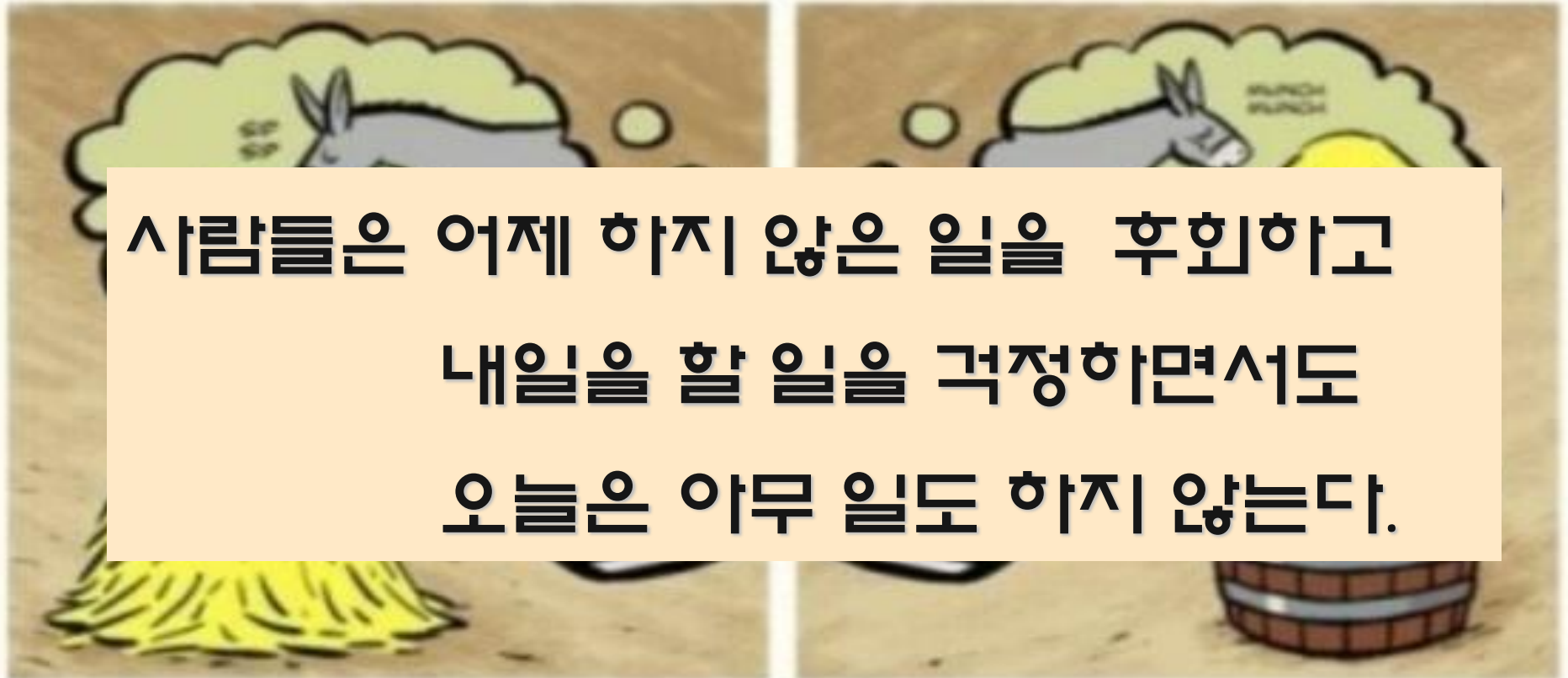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 + 소득월액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3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을 할 일을 걱정하면서도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